

도시계획시설사업(문화공원1, 2) 실시계획 고시

(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59번지 일원 북항친수공원)

1.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613호(2008.10.31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78호(2026.08.05.)로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최종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문화공원 1, 2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(☎888-3811), 동구 체육녹지과(☎440-4533), 중구 안전도시과(☎600-453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6년 10월 14일

부 산 광 역 시 장

가. 사업 시행지: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59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시설사업(문화공원)

다. 사업의 명칭: 북항친수공원내 편의시설 조성사업

라. 사업의 규모: A=102,985.8㎡(문화공원1 49,583.0㎡, 문화공원2 53,402.8㎡)

마. 사업시행자의 성명(주소): 부산광역시장(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)

바. 사업의 착수예정일(준공예정일):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(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)

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

연 번	소재지	지 번	지 목	공 부 면적 (m ²)	편 입 면적 (m ²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자			사유
						성 명	주 소	성명	주 소	권리내용	
합 계				102,985.8	102,985.8						
문 화공 원 1				49,583.0	49,583.0						
1	초량동	1259	공	49,583.0	49,583.0	부 산 광역 시	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				
문 화공 원 2				53,402.8	53,402.8						
1	초량동	1261	공	20,481.5	20,481.5	부 산 광역 시	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				
2	초량동	1251	공	8,961.8	8,961.8	부 산 광역 시	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				
3	중앙동4가	107	공	13,344.2	13,344.2	부 산 광역 시	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				
4	중앙동4가	120	공	4,088	4,088	부 산 광역 시	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				
5	중앙동4가	118	공	3,565.4	3,565.4	부 산 광역 시	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				
6	공유수면			2,961.9	2,961.9						